

위반건축물 처분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

「건축법」 제79조(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 규정에 의거 「건축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사전통지」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. 9. 3.

PAJU

파 주 시



1. 공고내용 :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 통지
2. 공고기간 : 2026. 9. 3. ~ 2026. 9. 17.(14일간)
3. 공고장소 : 파주시청,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
4. 관련법규 : 「건축법」 제79조 및 행정절차법」 제21조
5. 공시송달 내역

대지위치	건축주	위반내용 및 규모	위반법규	사유
파주시 금촌동 936-26 [동산5길 6]	김O업	- 근생(증축)(3~6층), 117.38㎡ - 근생(고시원) → 주택, 834.94㎡	「건축법」 제11조, 제19조	폐문부재

6. 기타사항

- 공고 기간이 경과하면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의 제3항에 따라 상기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,
- 상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「건축법」 규정 등에 의한 행정처분(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) 할 예정이오며,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건축디자인과 **【☎ 031-940-4764】**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